

2015년 현장점검 결과물의 활용성 확대를 위한 대토론회

현장제도 개선 사항 중 사업화 · 상품화 아이디어 발굴

2016. 2. 4

이효찬 여신금융연구소 실장



여신금융연구소
THE CREDIT FINANCE RESEARCH INSTITUTE

신용카드

- I. 자발적 온라인 카드신청 시 경제적 이익 제공기준 완화
- II.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 관련 규제 완화
- III. 모바일카드 단독 발급 허용(즉시발급, 대출서비스 허용)
- IV. 5만원 이하 무서명 거래 활성화
- V. 신용카드 한도 초과 시 일시적 한도초과 승인 허용
- VI. 카드 갱신 시 초년도 연회비 면제 허용

리스 · 할부

- I. 캐피탈업권의 보험대리점 업무 허용
- II. 문자전송(LMS) 마케팅 규제 완화

공 통

부동산리스 관련 업무대상회사 범위 확대 및 세제혜택 마련

1. 자발적 온라인 카드신청 시 경제적 이익 제공기준 완화

* 건의시기 및 답변사항

- 불수용 과제 재검토 결과에 따라 수용 → 향후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추진

- [현황·문제점] 현행 여전법은 카드 모집 시 경제적 이익 제공을 연회비의 10%로 제한하고 있어 온라인 모집채널 활성화에 한계
- [개선사항] 향후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온라인 카드신청에 한해 경제적 이익 제공 한도 완화
- [사업화·상품화 방안] 온라인을 통한 카드 신청 시 모집비용이 절감(약 18만원 수준)
 - ⇒ 회원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고품질의 다이렉트 상품 출시 가능
- [기대효과] 소비자 선택 기회 증대, 자발적 카드발급 유도로 건전한 카드발급 문화 정착, 모집인에 의한 정보유출 위험 감소
- [추가필요조치 사항] 조속한 시행령 개정 추진 필요

II.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 관련 규제 완화

* 건의시기 및 답변사항

재산관련 의제소득 확인서류에 재산세과세증명 포함 ⇨ 2주차 현장방문 건의 **(수용)**

신용카드 이용한도 정기적 점검 시 우량회원에게 대한 점검대상 제외 ⇨ 불수용 과제 재검토 결과에 따라 **수용**

1. 재산관련 의제소득 확인서류에 재산세과세증명 포함

- **[현황]**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규준에 따르면 카드 결제능력 평가와 관련한 재산관련 의제소득 확인용 서류를 5가지*로 제한

* 1) 국토부 부동산공시가격, 2) 감정평가법인 감정서, 3) KB부동산 시세, 4) 은행자체평가액,

5) 최근 3년 이내 등기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거래가격

- **[문제점]** 연소득 증빙의 어려움으로 소득이 과소 계상 됨에 따른 카드발급 거절 및 정확한 이용한도 산정에 대한 문제 발생 소지
- **[개선사항]** 모범규준의 결제능력 평가기준 중 재산관련 의제소득 산정 시 ‘객관적 시세 확인 가능서류’ 에 재산세과세증명서 포함

⇒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규정 개정 필요**

II.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 관련 규제 완화 (계속)

2. 신용카드 이용한도 정기적 점검 시 점검대상에서 우량회원 제외

- [현황 및 문제점] 우량회원에게 이용한도 정기적 점검(연 1회 이상)을 적용하면서 가처분소득 재 산출에 따른 이용한도 축소 및 소득증빙서류 징구로 인한 불편 초래
- [개선사항] 소비자 불편사항 해소 및 동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감독규정 및 모범규준 개정 등을 통해 부도율이 낮은 우량회원을 점검대상에서 제외

⇒ 감독규정, 모범규준 개정 필요(16년 하반기 추진예정)

- [상품화 방안] 연소득 증빙 어려움을 일정부분 해소하여 신용카드 발급 거절 사례 감소 및 틈새 카드 고객군 발굴
- [사업화 방안] 연체 없는 우량회원의 소득증빙서류 미징구 등에 따른 고객 불편 해소를 카드 사용 활성화 기대
- [기대효과]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 규제 완화로 소비자 만족도 증가 및 합리적인 신용 사회 정착에 기여

Ⅲ. 모바일카드 단독 발급 허용

<추가건의 : 모바일 단독 신용카드 즉시 발급 및 대출서비스 허용>

* 건의시기 및 답변사항

- 비씨카드 현장방문('15.4.8) 건의 → 모바일 단독 신용카드 발급 허용 [수용]

[추가건의] 즉시 발급 및 대출서비스의 경우 정착상황에 따라 단계적 허용

- [현황 및 문제점] 휴대폰 공인인증서 저장, 공인인증서 外 다양한 본인확인 수단 사용이 가능 하지만 실물카드(플라스틱 카드)를 발급을 전제로 모바일 카드 사용 가능
 - 스마트폰 이용 활성화로 모바일 카드 단독 발급으로 시간과 비용도 절감*
 - * 발급비용은 실물카드의 약 15%
- [개선사항] 모바일카드 단독 발급 허용(단, 당일 즉시발급 및 대출서비스의 경우 정착상황에 따라 단계적 허용)
- [상품화 방안] 모바일 단독 신용카드 발급허용에 따른 상품화(A카드사 기준)
 - 발급 현황(2015.5~12월) : 총 발급 10,504장
 - 유의거래 모니터링 : 유의발급 · 거래사고 건수 없음
 - 신청 · 발급 프로세스
 - 명의도용을 통한 부정발급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신청 · 발급 각 단계별 2개(본인인증, USIM확인, FDS 검증)이상의 본인여부 확인하고 안전하게 심사 후 발급
 - * Mass 및 제휴상품(SPC Happy Point)을 통해 프로세스 안정성 검증

Ⅲ. 모바일카드 단독 발급 허용 (계속)

<추가건의 : 모바일 단독 신용카드 즉시 발급 및 대출서비스 허용>

- **[추가건의] 결제 편의성 제고 등 모바일카드의 도입 취지를 살리고 모바일 결제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실물카드와 차별 없는 기능 강화가 필요**
 - 모바일 단독 신용카드 발급이 허용되었으나, 당일 즉시발급 불허로 고객 편의성과 신속성 저하
 - 모바일 단독 카드 출시 이후 보안은 강화되었으나 대출서비스 제한으로 동일한 심사절차를 거쳐 발급된 실물카드 회원과의 역차별 발생
 - 발급 심사과정이 실물카드와 같고, 본인 모바일 기기 인증이 추가된 강화된 발급프로세스 운영 중
 - 모바일 단독 신용카드 발급 허용 이후 유의발급, 부정사고 사례 전무
 - **[추가 필요 조치 사항] 모바일 단독 신용카드의 당일 발급 및 카드대출 금지규제 완화**
ex.삼성페이 등 모바일카드를 통한 대출서비스 이용 허용 필요
 - * 감독원장 주관 CEO 간담회(15.12.8) 및 서민금융대토론회(16.1.26)를 통해 금융위와 협의하여 당일발급 및 카드대출 허용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임을 표명
 - **[기대효과] 심사완료 후 즉시 발급허용 시 고객의 편의성과 신속성 향상**
 - 대출서비스 허용 시 카드대출을 위해 실물카드를 추가발급 해야 하는 고객의 불편 해소 및 카드 발급비용 절감 {年 10만 발급시 약 4.1억 절감(A 카드사 기준)}
- ※ 모바일 단독발급 가이드라인(15.5.1 제정) 개정 필요

IV. 5만원 이하 무서명 거래 활성화

- * 건의시기 및 답변사항: 13주차 현장방문 건의 → 감독규정 및 표준약관 개정 추진
- * 진행경과 : 감독규정 개정 의결(16.1.27), **표준약관 개정 추진 중 [수용]**

- **[현황 · 문제점]** 무서명거래 가맹점은 현행 법규에서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어 업무처리절차상 번거로움 발생
 - **[개선사항]** 가맹점과의 별도 계약체결을 **통지절차로 같음**
 - **[사업화 방안]** 카드결제구조 비용효율화를 통한 카드사 체질 개선으로 결제시장 환경변화에 맞춘 사업전략 마련 가능
 - **[기대효과]** 서명절차 생략으로 인한 결제 신속성 증가로 소비자 편의 증대
 - 무서명거래 건에 부정사용 사고 발생 시 **가맹점 책임 부담이 없으며 결제대기 시간 간소화로 가맹점 만족도 상승을 통한 매출증대 기여**
- ⇒ **신용카드 가맹점표준약관 개정 필요**

V. 신용카드 한도 초과 시 일시적 한도초과 승인 허용

* 건의시기 및 답변사항: 2주차 현장방문 건의 → 일부 수용

- [현황 · 문제점] 이용한도가 사전에 정해짐에 따라 **정상거래중인 회원임에도 이용한도를 초과하는 카드결제 시 회원의 신청범위를 초과하는 것으로 보아 거래승인 거절**
 - 여전법에 따르면 신용카드 이용한도는 ‘회원이 신청한 범위 내’ 에서 책정토록 규정
 - 그러나, 이용한도를 초과하는 카드거래는 대부분 초과금액 10만원 이내의 소액초과거래가 대부분으로 거래승인 거절로 인해 고객의 불편을 초래
 - * **이용한도의 일정수준(사전 이용한도의 10% 등) 또는 일정규모 이내(30만원 등) 한도 초과 거래는 ‘회원이 신청한 범위 내’ 로 간주하는 등 각사별 내부기준 마련**
- [사업화 방안] 카드사별 리스크 관리 역량에 따른 차별화된 회원관리 강화방안 모색
- [기대효과] 카드결제 거절로 인한 소비자 불편 감소로 편익 증대와 계획적 소비를 위한 회원의 한도신청 가능
 - 예상치 못한 소비에 대응하여 회원이 한도를 과도하게 설정하는 것보다 일시적으로 한도 초과 승인을 허용해줌으로써 적정한 한도신청이 가능

⇒ **별도의 규정개정 불필요**

VI. 카드 갱신 시 초년도 연회비 면제 허용

* 건의시기 및 답변사항

- 11주차 현장방문 건의 → **개인회원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추진 **(수용)**

- **[현황 · 문제점]** 현행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6조 제2항에 따르면 신용카드 최초 발급시 연회비는 면제되지 않으며, 갱신 발급 시에도 동 규정은 예외 없이 적용
- **[개선사항]** 갱신 발급 시에는 연회비 면제 필요
- **[기대효과]** 카드갱신의 경우 기존 회원에 대해 카드를 갱신하는 것에 불과한 사항으로 ‘최초년도 연회비’ 면제 시 고객불만 해소 등 회원서비스 제고 가능
- **개인회원 표준약관 개정 진행 중**

1. 리스 · 할부 업권의 보험대리점 업무 허용 (계속)

* 건의시기 및 답변사항: 10주차 현장방문 건의 → **불수용**

- **[현황]** 현재 보험업법(法 § 91조, 令 § 40조)은 대부분의 금융업권^{주1)}에 보험대리점 업무를 허용 중이며, 백화점 등 타업권^{주2)}은 본업과 연계된 보험상품 취급이 가능한 단종보험대리점 업무를 허용

주1) 은행,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상호저축은행,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카드업자, 농협

주2) 수의업, 기타 대형종합소매업, 가전제품 소매업, 중고자동차판매업, 자동차신품판매업, 정기항공운송업, 골프연습장 운영업, 스포츠용품판매업, 백화점, 애완용 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가전제품 소매업, 기타 대형종합소매업, 여객운송업, 여행사업,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 주거용 · 비주거용 부동산 관리업

- **[문제점]** 대부분의 업권에서 보험대리점 업무를 영위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신전문금융회사(카드사 제외)에게만 보험대리점 업무를 허용하지 않고 있어 업권 간 형평성 문제 초래
- **[개선사항]** 여신전문금융회사(카드사 제외)의 보험대리점 업무를 허용

1. 리스·할부 업권의 보험대리점 업무 허용 (계속)

- **[사업화 방안] 리스·할부금융사의 경우 주요 취급품목이 자동차, 기계설비 등으로 보험대리점 업무를 허용할 경우 고객서비스 제고를 위한 연계상품개발(One-Stop 서비스)로 시너지 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
 - 자동차 : 책임보험(의무), 종합보험(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손실 등)
 - 산업기계, 건설기계, 의료기기 등 : 동산종합보험, 화재보험
 - 선박, 항공기 : 선박보험, 항공보험
 - 부동산 : 부동산권리보험
 - 기타 : 신용손해보험*, 상해보험

*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미상환액을 보상하는 보험
- **[기대효과 1] 산업·건설기계, 의료기기, 선박, 항공기 등 보험이 필요한 물건을 리스하는 중소기업의 편의성 제고를 위한 원스탑 서비스 제공**
- **[기대효과 2] 리스·할부금융사의 전문성을 반영한 특화 상품 개발을 통해 소비자 권익 및 상품 선택권 강화**
- **[추가필요조치] [보험업법시행령\(제40조제1항제3호\) 개정](#)**

II. 문자전송(LMS) 마케팅 규제 완화

- 건의시기 및 답변사항: 10주차 현장방문 건의 → **일부수용**

⇒ 동 가이드라인의 제정 취지를 엄격히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자율적 운영

- **[현황 및 문제점]**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비대면 영업에 대한 가이드라인('14.4.1)에 의거 기존 마케팅에 대한 동의 외에도 채널(문자, 이메일, 전화)별 동의를 추가로 받아야 함
 - 특히, 문자전송의 경우 타 채널(이메일, 전화)들과는 달리 이전 마케팅 포괄동의를 기반으로 마케팅 할 수 없고, **문자전송 동의 취득자에 대해서만 마케팅이 가능**
- **[개선사항]** 문자전송의 경우에도 **이메일 수신 및 전화 통화와 동일하게 기존 포괄동의를 기반으로 마케팅 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
 - 불가하다면, 전화상담과정에서 문자 수신에 대한 1회성 동의를 구두로 받았을 경우
[동의에 대한 녹취를 전제로]만이라도 문자 발송을 허용
- **[사업화 방안]** 소비자에게 상품 비교 정보 및 신규 연계상품에 대한 정보 제공
- **[기대효과]** 연계상품이 필요한 소비자의 편의성 제고 및 다양한 정보 제공을 통한 소비자의 상품 선택권 강화
- **[추가필요조치 사항]** 비대면영업가이드라인 개정 필요

부동산리스 관련 업무대상회사 범위 확대 및 세제혜택 마련

* 건의시기 및 답변사항: 6주차 현장방문 건의

→ 추가 검토 : ' 15.5.1부터 시행된 제도로 제도 정착된 후 도입 성과 등을 분석 후 검토가 필요,
리스사에 대한 세제 혜택은 관련부처와 협의하겠음

※ 다만, 카드업권의 경우 업무용 부동산 시설대여기준 관련 총자산의 범위에서 카드 고유업무 관련 자산 제외는 수용기로 함 (11주차 현장방문 결과)

[감독규정 개정 필요사항]

* 진행경과 : 없음

■ [현황] 2015.5.1. 여전법 시행령 개정으로 여전사의 부동산리스 취급범위가 확대*

- * '대상자 확대(중소제조업체 보유업무용 부동산 → 중소기업 전체), 리스방식 확대(Sales & Leaseback 방식으로 제한 → 제한 없음), 최소리스기간 축소(8년 → 3년) 등
- 중소기업 업무용 부동산 시설대여를 할 수 있는 여전사는 직전 회계연도말 기준으로 기계설비 등에 대한 시설대여잔액이 총 자산의 100분의 30이상을 충족토록 제한(감독규정·신설)
- * 여전업 감독규정 제2조의2 제1항 제4호

부동산리스 관련 업무대상회사 범위 확대 및 세제혜택 마련(계속)

■ [문제점]

- **캐피탈사** : 14년말 기준 시설대여잔액(차량제외)이 총자산의 30%이상인 회사는 6개사* 중 실제 취급여력이 있는 회사는 2~3개사에 불과하여 여전법 시행령 개정·시행('15.5.1 시행) 이후 9개월간 취급실적이 전무한 상황

* 데라게란덴, 한국씨티그룹캐피탈, 한국캐피탈, DGB캐피탈, 두산캐피탈, 효성캐피탈

- **카드사** : 카드 신용판매액, 현금서비스액, 카드론 등 카드고유업무 관련자산 비중이 大

⇒ 카드고유 자산을 총자산에 포함할 경우 부동산 시설대여 자체가 불가능

- **[공통]** 부동산 리스 활성화를 위해서는 유사임대용역(REITs, 유동화전문회사 등)을 상대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취득세 감면 등 적극적인 세제 혜택부여 필요

부동산리스 관련 업무대상회사 범위 확대 및 세제혜택 마련 (계속)

- **[사업화 방안] 다양한 부동산리스 수요에 맞춘 보다 적극적인 부동산 리스업무 수행**
 - 자동차 캡티브 캐피탈사의 경우 자동차 제조협력업체에 대해 사무실, 공장 등 리스
 - 중소기업에 대한 설비리스 취급 확대 시 설비와 부동산을 동시(one-stop)에 제공하여 중소기업의 편의를 증진
 - 프랜차이즈 가맹점주가 설비리스를 받는 경우 점포(부동산)까지 동시(one-stop)에 제공
 - 외국계 회사의 경우 리스를 통해 사무실 등을 임차하고자 하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바, 외국계 회사 맞춤형 부동산 리스 확대
- **[필요조치 사항] 부동산 리스 취급회사 범위를 **전체 여전사로 확대**하는 한편, **세제혜택**을 위한 지방세법, 법인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 **[지방세법]** 리스실행이전 또는 리스계약 해지 후 일시적으로 보유하는 부동산은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므로 유사 임대용역과 같이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포함시켜 낮은 세율 적용
 - **[법인세법]** 리스실행이전 또는 리스계약 해지 후 일시적으로 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업무용과 동일하게 손금산입 필요
 - **[지방세특례제한법]** 부동산리스 도입초기에는 취득세 30~50% 감면 등
 - * 과거 REITs, 유동화전문회사 등도 도입초기 취득세를 감면 받은 사례(30~50%, 14년 말 일몰) 를 고려하여 이와 유사한 세제혜택 도입

부동산리스 관련 업무대상회사 범위 확대 및 세제혜택 마련 (계속)

- [기대효과 1] 부동산리스 시장에 여신금융회사가 적극 참여함으로써 **중소기업 등에 대한 자금 지원 기능 확대**
- [기대효과 2] 여신금융회사의 사업다각화를 통한 **수익구조개선에 기여**
- [추가필요조치 사항] 여전업감독규정 개정 필요

⇒ **[부동산리스 제한 요건 완화]** 여전업 감독규정 개정 필요

[세제개선] 지방세법, 법인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필요

감사합니다.